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위치확인 전자장치 지원 등 》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862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정 경 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15

I .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11. 26.

(3) 회 부 일 : 2024. 11.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실종이나 사고에 특히 취약한 치매환자 및 장애인 등의 경우 위치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서의 장이 수색 또는 수사를 실시하고, 이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은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장애인 및 치매환자(이하 “지적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실종 등으로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지적장애인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장애인등의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도록 배회감지기 등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의 실종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보급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된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보존·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3(지적장애인 및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비용 지원) ① 경찰청장은 제2조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사람(이하 “지적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실종 등으로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지적장애인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장애

인등의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전자장치(이하 이 조에서 “위치확인 전자장치”라 한다)를 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보급한 위치확인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조회·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1.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지적장애인등의 보호자가 지적장애인등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상시 수집 및 활용 절차, 제2항에 따른 자료 보존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u>따른 열람·조회·제공·공개 방법</u> <u>및 절차, 제4항에 따른 폐기 방법</u> <u>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u> <u>정한다.</u>
--	--

2. 주요 검토 사항

□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이나 일부 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의미하며,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는 일은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이 협력하여 수행함¹⁾).

이는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신속한 상황 판단에 대한 한계 등으로 실종되었을 경우 자력복귀 가능성이 부족하여 국가가 특별히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2005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실종아동법」)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4. 제8조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5.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6.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가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3. 제11조에 따른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책무와 제2항의 경찰청장의 책무 등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수행을 종합·조정한다.

제정 당시에는 “실종아동등”의 범위가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과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현행법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포함함.

- 최근 유전자 검사 등의 과학수사와 CCTV 등의 사회안전망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최근 5년간 실종아동등의 실종발생 신고접수 건수는 3만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의 경우 미발견 비율이 일반 18세 미만 아동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실종아동등 신고 및 미발견 현황 >

(경찰청, '24.11월, 단위 : 건)

구분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전체)		(18세 미만)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총누적	-	1,190	-	227	-	35	-	227
'20년	19,146	4	7,078	6	947	0	12,272	2
'21년	21,379	2	7,166	4	740	0	12,577	9
'22년	26,416	9	8,881	6	943	0	14,527	8
'23년	25,628	7	8,440	13	922	0	14,527	12
'24년11월	23,785	72	7,789	41	887	1	14,470	19

* 접수: 당해연도 기준, 미해제: 현 시점 기준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민간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2021년부터 치매환자 및 발달장애인에게 매년 4천여 건의 위치추적기(배회감지기) 및 통신비(2년)를 지원하는 ‘행복 GPS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참고자료 1), 아동권리보장원은 협약사업

대상이 아닌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단말기²⁾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인지장애가 있는 장기요양 보험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배회 감지기를 대여하여 지원³⁾하고 있음.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센터) 위치추적단말기 지원 사업 개요 >

- (대상) 실종신고 이력이 있는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 (내용) 2019년부터 장애인의 반복 실종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동의) 또는 실종신고 이력이 있는 장애인의 보호자 요청 시 장애인에게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
 - * (지원내역) 단말기 기기 구입 및 통신비(2년) 지원
 - * 2023년까지는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지원하였으나 2024년부터 중복배제를 위해 정신장애인 지원으로 변경

○ 위치추적단말기 지원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지원현황	86대	93대	169대	157대	118대

* 치매환자에 대하여는 중앙치매센터에서 위치추적 앱을 지원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배회감지기를 지원하고 있음.

□ 현행 「실종아동법」은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인위치 정보사업자⁴⁾에게 개인위치정보⁵⁾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위치 측위 기능이 탑재된 단말기로서 보호자가 정해 놓은 활동지역을 벗어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메시지를 전송하는 기기임. 치매환자는 중앙치매센터에서 위치추적 앱을 지원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배회감지기를 지원하고 있음.

3) 2023년 말 기준 4,293건 이용 중으로, 기기대여료와 통신비의 85%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은 월 900원~5,300원 발생함.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6. “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은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① (생 략)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2. ~ 4. (생 략)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서의 장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수색 또는 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①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한 후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요청 실시 및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의 내용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의 이용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고, 개인위치정보등 파기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인쇄물·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⑥ (생 략)

□ 지적장애인 및 치매환자 실종발생 사례 증가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실종대응 업무수행이 강조되고 있는바, 지적장애인

및 치매환자에 대한 위치확인 관련 경찰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한 전자장치의 상시적 활용 및 그에 대한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도 명시하려는 개정안은 위치확인 전자장치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도 「실종아동법」과 연계하여 경찰관서에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⁶⁾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긴급구조를 위한 경우가 아닌 위치정보⁷⁾의 경우는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③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들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들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는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9.>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의 파기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들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들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들은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 위치정보사업자들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를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③ ·④ (생략)

⑤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 요청을 받은 위치정

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각각의 측위 방식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위치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경찰관서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요청자
2. 요청 일시 및 목적
3.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4.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제2항 단서로 한정한다)

⑩ · ⑪ (생략)

□ 현행 「실종아동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아동등 수색주체인 경찰청장이 위치정보 등을 수집·이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의 보존·열람 등의 운용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있어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특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위치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제23조제1항)에도 개정안에서 이를 경찰청장이 상시적으로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적절성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개인위치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된 것을 말한다.

□ 아울러,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예방 목적으로 위치확인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통하여 이들을 상시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등도 제기될 수 있고, 개인위치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 시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자와 본인의 의사가 다를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지적장애인 등의 실효적 자기결정권 보호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호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는 등 동의요건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한다)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등의 실종예방 등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의 장애인 등에 대한 위치정보의 상시적 수집과 보존·활용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장애인권리협약⁸⁾에 따라 우리 정부에 권고한 ‘장애인에 위치추적기 부착 시 사생활 등 권리보호’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이 ‘지적장애인등’에 해당하는 자의 의사능력 보유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개인위치정보 수집·제공이 가능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입장이며, 이동통신 3사도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현실⁹⁾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0

8)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2조(사생활의 존중) 1. 장애인은 거주지 또는 거주형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 및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에 관하여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하여 불법적인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은 그러한 간섭 또는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의 개인정보 및 건강과 재활에 관한 사적 정보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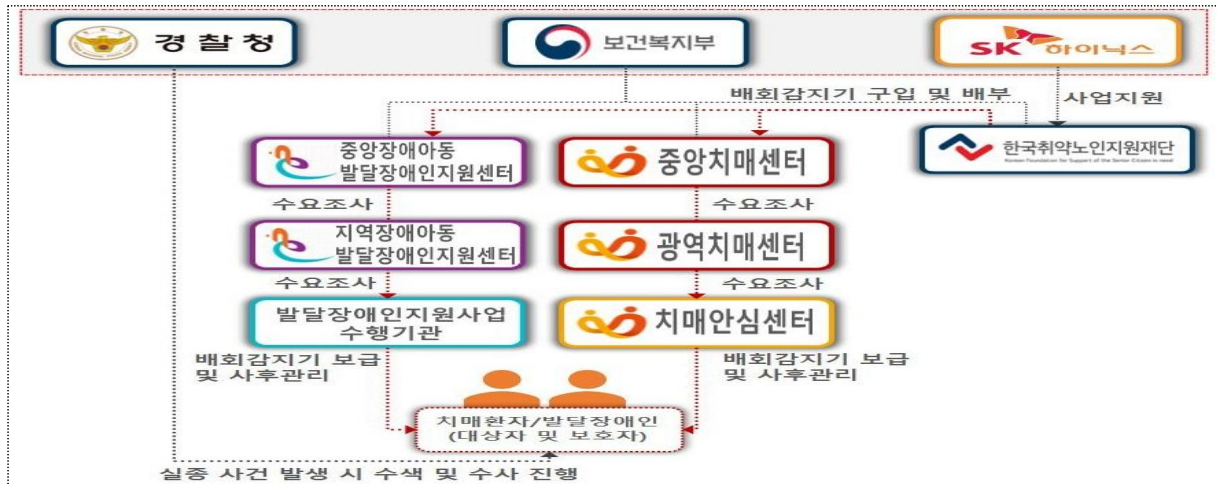
9) 개인 위치정보는 ‘이동전화단말장치’ 기지국, GPS, WIFI 기능 등으로 측위하므로, 특정 전자장치의 탐지로는 위치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입장임.

참고

행복GPS사업<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협약사업>

□ 사업 개요

- (사업명) 복지부·경찰청·민간협력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행복GPS 사업)
- (사업내용) 민간협력으로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 보급 및 통신비(2년) 전액 지원('21년~)
 - ※ 민간기업(SK하이닉스) 사회공헌활동 기금으로 운영되어 연간 배부물량 제한
 - ※ (협약연혁) (1차, '17.8.)경찰청-SK하이닉스 → (2차, '21.7) 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3차, '24.7.5) 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 (지원대상) 배회나 실종경험 혹은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발달장애인
- (사업 수행체계)
 - (SK하이닉스) 후원금 조성(행복나눔기금) 및 배회감지기 무상 지원
 - (보건복지부) 배회감지기 보급<중앙치매센터,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경찰청) 사업 홍보, 실종 시 수색, 수사에 활용 및 사례관리



□ 연도별 보급현황

(단위 : 대)

구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11.
치매환자	9,894	3,106	2,567	1,861	2,360
발달장애인	6,294	2,044	1,700	1,010	1,540
합계	16,188	5,150	4,267	2,871	3,900

※ 2023년의 경우 기기 모델 변경 및 단가 상승(이전 기종 대비 2배)으로 지원대수 감소